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21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김미애・이만희・백종헌

고동진 • 서명옥 • 서지영

주진우 • 이인선 • 안상훈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 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제1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2회"를 "3회"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

19조의2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	제19조(육아휴직) ①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u>만 8세</u>	<u>만 12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		
<u>하</u> 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u>히</u>		
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			
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u>1년</u> 이	② <u>2년</u>		
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① <u>만 12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		
<u>하</u>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u>ठ</u> }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			
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③ (생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u>만 8</u>

②·③ (현행과 같음)
4
2년

<u>.</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
3ুই]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u>만 12</u>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 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sim	4.	(생	략)

② (생 략)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u>이 하</u>
<u>.</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